

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
(의안번호 제608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. 17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고흥호의원 외 5인  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. 17  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2. 10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의회운영위원회 상정·의결

### 2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법령에 근거하여 개정코저 함.

### 3. 주요골자

- 가. 의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종전 350,000원에서 550,000원으로 개정(안 제2조제1항)  
나. 『회의수당』을 『회기수당』으로 명칭변경  
(안 제명, 제1조 내지 제7조)  
다. 종전 회의수당을 50,000원에서 70,000원으로 개정(안 제4조)  
라. 국외여비지급기준(안 별지)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기초자치단체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과 국외여비지급기준이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0. 2. 10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